

4 (第119回-第1次)

(뒤에 실음)

○議長 崔鍾午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32分 散會)

○出席議員

94人

朴正哲	金成浩	宋台京
崔忠敏	李健相	鄭鉉均
金恩京	金在實	金判吉
金興植	朴來雨	宋美花
柳辰永	金寬洙	金星煥
徐興善	李海植	吉基演
鄭圭鎭	韓春子	林浩植
趙養鎬	金光洙	金善會
金泰潤	金奇德	羅鍾文
李東泰	崔明玉	金魯珍
金俊明	任東淳	任元彬
崔榮壽	咸泰浩	金明洙
河海鎭	金聖泰	李政恩
金鎬一	黃乙秀	洪淳喆
韓鳳洙	李松竹	尹汝亨
李敬愛	朱世晚	金吉原
金種求	金永俊	閔庚輝
申炯植	呂鼎九	郭順英
梁敬淑	李금라	張夏雲
鄭韓植	金鍾來	李成浩
車星煥	劉俊相	洪承采
盧永奭	車元甲	趙成大
安秉昭	李亮漢	張鎭國
林東奎	李英順	劉大運
李康珍	許光泰	閔鍊植
李容富	朴洙桓	李康玉
鄭在天	高溶振	具哲會
金洛淳	金周喆	鄭泰宗
金玉源	金喜甲	朴謙洙
李禮子	崔鍾午	崔鍾德
吳世根	李載震	李喆鎬
李聲九		

서울특별시·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590

발의년월일 : 2000년 4월 17일  
발 의 자 : 이용부의원 의 13인

1. 주문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7조
-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

서울특별시·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요구일 : 2000년 4월 20일(목) 14:00
- 출석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 출석 이유 :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부시장(3), 실·국·본부장, 지방공사 및공단사장,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2000년도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

감사시기결정의견

의안  
번호 591

제안년월일 : 2000년 4월 19일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II.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의2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III.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2000. 6. 20(화) ~ 6. 29(목) 10일간

※ 참고사항

1.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
2.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종합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회부
3.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중 일비(1일당)란 및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가등급 40	가등급 186
나등급 40	나등급 135
다등급 40	다등급 107
라등급 40	라등급 91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의안  
번호 593

제안년월일 : 2000년 4월 19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21세기준비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한다.

II. 제안이유

1999년 10월 21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하고 1999년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21세기준비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각각 2000년 4월 25일로 종료되나,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 건의가 있어, 200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각각 연장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합결산하고 운영의 효성을 높이고자 함.